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10. 15 선고 2020가단26053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2,975m²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와 2001. 10. 18. 접수 제76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송인권

별지